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3
----------	------

제출년월일 : 2011.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온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 시에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2(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개정
- 나.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추어 재정비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접수사항 1건 있음.(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붙임 : 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기타참고사항 (관계법령 및 공문)
라. 의견제출 및 처리 내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를 "제26조제4항에"로 하고 한다.

제7조제2항 중 "상당하는"를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제6조 관련)

부과기준	수수료 및 사용료(원)			
	배출신고 대상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 처리 시설사용료	계
100리터당	허가대상	900	200	1,100
	신고대상	940	150	1,090
	신고미만	970	110	1,08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u>법 제8조의 규정에</u>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① ----- --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u>제3항의 규정에 의한</u>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 ----- <u>제3항에 따른</u> ----- ----- ----- -----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u>제28조의 규정에 의한</u> 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신 설></u>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 ----- ----- <u>제28조에 따른</u> ----- ② <u>제1항에 따른</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u>제2항에 따라</u>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	제6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

현 행	개 정 안
<p>수) 시장 및 대행자는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수) ----- 제26조제4항 에 -----</p> <p>----- ----- ----- ----- -----</p>
<p>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u>상당하는</u>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해당하는</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p> <p>3.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 ----- ----- 3.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 -----</p>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 통지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축산 선진국과의 FTA협정 체결 후 우리축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축산농가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정부의 축산업 허가제등 축산법의 개정이 축산농가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후에 지자체에서 나서도 충분함지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든 시기에 추진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 7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비용산정용역결과로 수수료를 현실화율(적정비용)대비 80% 이내로 연차적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2001년부터 물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 외부적인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는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2011년에 인상되는 수수료는 9%로 현실화율에 64%이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 것으로 금번 인상은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함.○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정조례가 시행 되기전에 완료 예정임(축산과)	미반영